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출자 :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2018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
-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공석)
- 사업비 : 3,7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3,200	3,700	3,700			3,700	

- 사업내용
  -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과제 선정, 연구 수행

## 3. 부서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 붙임 3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51조				전화번호 : 02-2071-2798		
	시행령 :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계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현황 (2017년 5월 현원기준)	51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30명 (5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과견되거나 당연직 (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 로 표시) ※ 예 : 12명 (4명)		21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2017년 5월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공 석			공 석		
부이사장		송○○	○○광역시 ○구 구청장		2017.02.28~2018.02.27		
원 장		공 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공 석		
이 사		최○○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김○○	○○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신○○	○○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우○○	○○도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김○○	○○도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이○○	○○도 ○○시 부시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신○○	○○도 ○○군 부군수		2017.02.28~2018.02.27		
이 사		이○○	○○광역시 ○구 부구청장		2017.02.28~2018.02.27		
이 사		손○○	○○대학교 교수		2017.02.28~2019.02.27		
감 사		김○○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조○○	○○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38,236 (자산 총액)
	예산액	7,518	8,406	9,986		부채	9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7,198	8,276	9,551		자본	8,62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8,933			6,912		2,020	

## [붙임 2]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전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를 위한 관련자료 송부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심의(안)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년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 자료 2.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정과장), 부산광역시(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세정과장), 광주광역시(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세정과장),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강북구청장(세무과장), 도봉구청장(징수과장), 노원구청장(재무과장), 은평구청장(세무1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마포구청장(징수과장), 기획재정부(재무과장),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구로구청장(징수과장),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영등포구청장(세무과장), 동작구청장(세무1과장), 관악구청장(세무1과장), 서초구청장(세무1과장),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강동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영도구청장(세무과장), 부산진구청장(시세과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세무과장), 해운대구청장(세무1과장), 사하구청장(세무과장), 금정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세무과장), 연제구청장(세무과장), 수영구청장(세무과장), 사상구청장(세무과장), 기장군수(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세무과장), 달성군수(세무과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재무과장),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재무과장), 광주광역시동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서구청장(세무1과장), 광주광역시남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북구청장(세무1과장),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남구청장(세무1과장), 울산광역시동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세무과장), 울주군수(세무1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세무팀장), 수원시장(세정과장), 성남시장(세정과장), 고양시장(세정과장), 부천시장(세정과장), 용인시장(세정과장), 안산시장(세정과장), 안양시장(세정과장), 남양주시장(세 정 과 장), 의왕시장(세정과장), 평택시장(세정과장), 시흥시장(세정과장), 화성시장(세정과장), 광명시장(세정과장), 파주시장(세정과장), 군포시장(세정과장), 광주시장(세정과장), 김포시장(세정과), 이천시장(세무과장), 구리시장(세무과장), 양주시장(세무과장), 안성시장(세무과장), 포천시장(세정과장), 오산시장(세무과장), 하남시장(세무과장), 의왕시장(세무과장), 여주시장(세무과장), 동두천시장(세무과장), 양평군수(세무과장), 파천시장(세무과장), 가평군수(세정과장), 연천군수(세무회계과장), 춘천시장(세정과장), 원주시장(세무과장), 강릉시장(세무과장), 동해시장(세무과장), 태백시장(세무과장), 속초시장(세무과장), 삼척시장(세무과장), 홍천군수(재무과장), 횡성군수(세무회계과장), 영월군수(재무과장), 평창군수(재무과장), 정선군수(세무회계과장), 철원군수(세무과장), 화천군수(재무과장), 양구군수(재정운영과장), 인제군수(세무회계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양양군수(세무회계과장), 청주시장(세정과장), 충주시장(세정과장), 제천시장(세정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재무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세정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천안시장(세정과장), 공주시장(세무과장), 보령시장(세무과장), 아산시장(세무과장), 서산시장(세무과장), 논산시장(세무과장), 계룡시장(세무회계과장), 당진시장(세무과장), 금산군수(재무과장), 부여군수(재무과장), 서천군수(재무과장), 청양군수(재무과장), 홍성군수(재무과장), 예산군수(재무과장), 태안군수(재무과장), 전주시장(재무과장), 군산시장(세무과장), 익산시장(세무과장), 정읍시장(세정과장), 남원시장(재정과장), 김제시장(세정과장), 완주군수(재정관리과장), 진안군수(기획재정실장), 무주군수(재무과장), 장수군수(재무과장), 임실군수(재무과장), 순창군수(재무과장), 고창군수(재무과장), 부안군수(재무과장), 목포시장(세정과장), 여수시장(세무과장), 순천시장(세무과장), 나주시장(세무과장), 광양시장(세정과장), 담양군수(세무회계과장), 곡성군수(재무과장), 구례군수(재무과장), 고흥군수(재무과장), 보성군수(재무과장), 화순군수(재무과장), 장흥군수(재무과장), 강진군수(세무회계과장), 해남군수(세무회계과장), 영암군수(재무과장), 무안군수(재무과장), 함평군수(재무과장), 영광군수(세무회계과장), 장성군수(재무과장), 완도군수(재무과장), 진도군수(세무회계과장), 신안군수(세무회계과장), 포항시장(세정과장), 경주시장(세정과장), 김천시장(세정과장), 안동시장(세정과장), 안동행정국장(세무과장), 영주시장(세무과장), 영천시장(세정과장), 상주시장(세정과장), 문경시장(세무과장), 경산시장(세무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청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봉화군수(재정과장), 울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창원시장(세정과장), 진주시장(세무과장), 통영시장(세무과장), 사천시장(세무과장), 김해시장(회계과장), 밀양시장(세무과장), 거제시장(세무과장), 양산시장(세무과장), 의령군수(재무과장), 함안군수(재무과장), 창녕군수(재무과장), 남해군수(재무과장), 하동군수(재무과장), 산청군수(재무과장), 함양군수(재무과장), 거창군수(재무과장), 합천군수(재무과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세무과장), 김해시장(남세과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세무1과장), 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세무1과장)

대리	행정지원부장	경영지원본부 2017. 5. 26. 장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본부-939 (2017. 5. 26.)	접수 재무과-12807 (2017. 5. 26.)
우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한국지방세연구 / http://www.kilf.re.kr
전화번호 02-2071-2798	팩스번호 02-2071-2722	/ monsy1@kilf.re.kr / 대국민 공개



#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60호(2017. 8. 10.)와 관련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을 통보하오니,
3.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 통보, 정산 등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붙임 출연금 산정서식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하여 '17. 8.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1부.  
2. 2018년도 출연금 집계표 1부. 끝.

##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전 시군 세무부서장

주무관	세정담당	세정과장	전결 2017. 8. 14.
협조자			
시행	세정과-10372	(2017. 8. 14.)	접수 재무과-20443 (2017. 8. 14.)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세정과 (사림동)	/ <a href="http://gyeongnam.go.kr">http://gyeongnam.go.kr</a>
전화번호	055-211-3717	팩스번호 055-211-3919	/ u7902041@korea.kr / 비공개(5)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